

제7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0. 12. 29.(수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
이경자 부위원장

송도균 위 원

형태근 위 원

양문석 위 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가. 서면회의 사유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와 제14조의1(서면보고)에 따른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에 해당됨.

나. 의결사항

1) '09년 4분기 의무편성비율 위반 방송사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- (주)일자리방송 등 3개 방송사업자 - (2010-79(서)-359~361)

- 「방송법」 제69조제4항, 제7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제4항, 제57조제4항에 따라 규정된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「방송법」 제108조제1항에 의거, 원안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.

< 사업자 별 위반내용 및 과태료 부과액 >

법 인 명 [채 널 명]	위 반 내 용	과태료 부과액
(주)일자리방송 [일자리방송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 ('09. 10월 : 기준비율의 3.4% 위반) ('09. 11월 : 기준비율의 1.3% 위반) 	300만원
(주)늘푸른농업방송 [ATV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 ('09. 10월 : 기준비율의 24.6% 위반) ('09. 11월 : 기준비율의 36.1% 위반) ('09. 12월 : 기준비율의 50.6% 위반) 	1,575만원
(주)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 [애니맥스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개 국가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('09. 4분기 : 기준비율의 16% 위반) 	1,468만 5천원

2)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- Eurochannel Inc의 Eurochannel 등 2개 방송 - (2010-79(서)-362)

- 「방송법」 제78조의2제1항 및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방송 재송신을 하고자 하는 2개 외국방송 사업자의 2개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함.

< 승인 내용 >

외국방송 사업자명	방송채널명	국적	방송분야	방송언어
Eurochannel Inc	Eurochannel	미국	영화·오락	영어 등 4개국
Transmedia Communication SA	I-Concerts	스위스	오락	영어

< 승인 조건 >

- ① 국내 지사, 사무소, 대리인 및 채널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며, 방송분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승인심사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③ 매년 말 기준으로 국내 송출현황 자료,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 현황 자료, 기여계획서상의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재승신 승인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이 개정되었을 때,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맞추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승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될 수 있다.
 - 방송내용이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때
 -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 - 방송내용이 형법,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때

3) SK텔레콤(주)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결정에 관한 건 - (2010-79(서)-363)

- SK텔레콤(주)이 제출한 가입자수 통계 오류에 따른 과징금 금액 경정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SK텔레콤(주)에 부과한 과징금 129억원을 114억 8천만원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함.

※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('10. 9. 24)에서 '09년 상반기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이익을 저해하는 등 「전기통신사업법」을 위반한 SK텔레콤(주), (주)KT, (주)LG U+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(SKT 129억원, KT 48억원, LGU+ 26억원)을 부과하기로 의결

○ 주요 내용

① SK텔레콤(주)의 과징금 금액 경정 신청 사유

-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2009년 상반기 SKT의 전체 가입자수가 실제로는 6,240,458건인데 이를 7,051,268건으로 잘못 계산하여 방통위에 제출
'전환신규' 810,810건을 '기기변경'에도 중복하여 계산

② 방통위의 검증결과 및 과징금 금액 감경 근거

- 검증결과 중복계산된 가입자수는 SKT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795,036건이라는 사실을 확인
- 검증 결과에 의할 때 SKT의 위반행위 관련 가입자수(3,577,631명→3,174,250명)와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('중대성 약함'의 상한 ; 258.0억원→229.7억원)이 모두 감소
- 따라서, 기준금액('중대성 약함'의 상한)의 50%를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 원심결의 취지를 고려, 최종 과징금을 129.0억원에서 114.8억원으로 14.2억원 감경

다. 보고사항

1) 「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신청절차 및 방법」(고시) 제정안에 관한 사항

○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 지원에 관한 신청절차 및 방법, 신청서식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「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신청절차 및 방법」(고시) 제정안을 보고 받음.

○ 주요 내용

- ①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센터, 디지털 컨버터 등의 용어를 정의(안 제2조)
- ② 지원대상가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하여 안내(안 제3조, 제4조)
- ③ 지원신청서와 위임장 등을 신청서류로 함(안 제5조)
※ 지원신청서에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, 서약서 포함
- ④ 지원센터나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하되, 우편, FAX, 인터넷 등을 통하여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⑤ 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(안 제7조)
- ⑥ 지원업무 추진과정에서 유료방송 가입이나 디지털TV 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지원 부적합 사유 발견 시 지원 중지(안 제8조)